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2가단50351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C

피고(선정당사자) D

변 론 종 결 2022. 5. 19.
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주 문

1.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
가. 피고(선정당사자) D는 6,773,621원 및 그중 6,666,668원에 대하여 2022. 1. 28.부터 2022. 6. 9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선정자 F, G는 각 4,515,747원 및 그중 4,444,445원에 대하여 2022. 1. 28.부터 2022. 6. 9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원고는 2022. 3. 9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이율을 연 12%에서 연 6%로 감축하였다).
2. 근거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김홍도

별지